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결 제2008-48-259호

사 건 명 (주)케이티프리텔의 개인정보 유용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사건번호 200810개정017

피 심 인 (주)케이티프리텔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18 롯데캐슬프라자 오피스타워
대표이사

주 문

1. 피심인은 과태료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 액 : 3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체신관서

2. 피심인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체결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별도로 분리하여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개선하고, 개인정보 활용 내역 보존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이행방안, 이행완료 시기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현황

나. 업무 절차 및 이용약관 규정 등

(3)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규정

2. 행위사실

가.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취급위탁 및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피심인이 2008년 4월 ~ 10월 기간 중 부가서비스 가입 유치 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위탁업체(○○○TX)에 제공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총 291,823건 중 10,310건을 표본 추출하여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이용자의 동의 취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동의 없이 1,989건의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여 문자 사랑 등 이벤트 소개, 로밍 홍보, 부가서비스 가입 유치 등의 TM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심인이 2008년 4월 ~ 10월 기간 중 이벤트 소개, 로밍 홍보, 부가서비스 가입 유치 등을 위해 TM 등을 실시한 총 3,063,430건의 이용자의 개인정보 활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TM 등의 수신을 거부하여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한 이용자에 대해 동의 철회일 이후 총 25건의 TM 등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철회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 조치의무 위반

피심인이 2008년 4월 ~ 10월 기간 중 이벤트 소개, 로밍 홍보, 부가서비스 가입 유치 등을 위한 TM 등의 실시 내역을 조사한 결과,

TM 등의 수신을 거부한 이용자에 대해 수신 거부일 이후 총 25건의 TM 등을 실시하여, TM 등을 거부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의 필요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아동 정보 수집

피심인의 2008년 11월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총 912,793건)에 대한 서비스 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취득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WISE)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2,675건을 수집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위법성 판단

가.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취급위탁 및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피심인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여 부가서비스 가입 유치 등의 TM을 실시하게 한 행위, TM 등의 수신을 거부한 이용자에 대하여 수신 거부일 이후 TM 등을 실시한 행위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급위탁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 정보통신망법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취급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6>
1.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② ~ ⑤ (생략)

※ 정보통신망법 제64조(자료제출 등) ①~③ (생략)
④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⑦ (생략)

※ 정보통신망법 제76조(과태료)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6. 제25조제1항(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한 자
③~⑥ (생략)

개인정보 수집 시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동의 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법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도 판단된다.

※ 정보통신망법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또는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보통신망법 제64조(자료제출 등) ①~③ (생략)
④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또한,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통해 동의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피심인의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약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인 바,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동 약관 조항은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그 역무별로 신고된 이용조건”에 해당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제1항제5호 역시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가입자 대비 위반비율이 0.014%로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3개월 이하)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 피심인 서비스 이용약관(2006.1.1 이후) 제11조(회사의 의무)
①~③ (생략)
④회사는 고객의 가입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 있으며, 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통해 동의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허가의 취소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별표 1]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5조제1항 관련)
5. 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사업정지 3개월

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철회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 조치의무 위반

피심인이 TM 등의 수신을 거부하여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한 이용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철회 시의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의무를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이용자의 권리)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이용자의 권리)
①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생략)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64조(자료제출 등) ①~③ (생략)
④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76조(과태료)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0. 제30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제30조제7항ㆍ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아동 정보 수집

피심인이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 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법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통신망법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64조(자료제출 등) ①~③ (생략)
④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76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1. 제31조 제1항(제6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4.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피심인이 이용자에 대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취급위탁 행위, 개인정보 활용 동의 철회 시의 이용자 개인정보 파기 등 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 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76조제2항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각 행위별로 각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76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5. (생략)
6.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한 자
10.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제30조제7항·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1. 제31조제1항(제6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나. 정보통신망법상 시정명령

아울러,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명한다.

①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체결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별도로 분리하여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개선
②이용자의 개인정보 활용 내역에 대한 보존 대책 수립□시행

이때, 구체적인 이행방안, 이행완료 시기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5.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과태료 납부명령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에 의거 납부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결　론

상기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08년 12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 시 중	(인)
	부위원장	송 도 균	(인)
	위 원	이 병 기	(인)
	위 원	형 태 근	(인)